

전주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3가단229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7.

판 결 선 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 대 374㎡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. 11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1. 11. 12. 접수 제107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이관용

별지